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075
----------	-------

발의연월일 : 2025. 12. 10.

발 의 자 : 안태준 · 정준호 · 백혜련
박용갑 · 이광희 · 김정호
이정문 · 김영진 · 윤종균
소병훈 · 조정식 · 최혁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 운전자격시험은 버스, 화물차와 달리 시험과목에 지리숙지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16개 시·도로 구분되어 자격시험을 운영 중으로 택시 운수종사자가 거주지 변경 등으로 사업구역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자격증을 재취득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택시업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시험응시 및 교육이수 절차로 인해 택시업계 구인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지리숙지도의 경우 최근 네비게이션 및 플랫폼 택시의 보급 등으로 그 중요성이 저하되고 있어 폐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임시택시운전자격의 경우 '20년 이후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운영되어 법제화를 통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택시 자격시험에서 지리숙지도를 폐지하여 자격시험 및 자격

증을 전국 통합으로 운영함으로써, 택시 운수종사자의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사업구역 이동을 용이하게 하고, 법인택시 또는 플랫폼운송사업 구직자에 대해 임시 운전자격을 1회(90일)에 한하여 허용함으로써 택시 운전자격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택시업계의 구인난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를 “국토교통부장관이”로,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를 “법령”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사자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하 “임시운전자격”이라 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운전자격의 유효기간은 임시운전자격 부여일부터 90일로 제한하고, 유효기간 중 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임시운전자격의 운영조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제24조제6항에 따른 임시운전자격을 갖춘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의 자세 및 안전 등 운전업무 종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9조의9 중 “플랫폼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플랫폼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플랫폼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로, “제25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의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4조제1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4조제1항 또는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4조제1항”을 “제24조제1항 또는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국토교통부장관은”으로 한다.

제94조제2항제6호 중 “제24조제1항”을 “제24조제1항 또는 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시운전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시운전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후 최초로 부여되는 임시운전자격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생략)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현행과 같음)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u>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u>법령과 지리숙지도(熟知度)</u>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u>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u> 자격을 취득할 것	3. <u>국토교통부장관이</u> ----- ----- <u>법령</u> ----- -- <u>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u>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u><신설></u>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사자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하 “임시운전자격”이라 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운전자격의 유효기간은 임시운전

	<u>자격 부여일로부터 90일로 제한하고, 유효기간 중 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⑦ 제6항에 따른 임시운전자격의 운영조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u>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생략) <u><신 설></u> ②·③ (생략)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현행과 같음) <u>② 운송사업자는 제24조제6항에 따른 임시운전자격을 갖춘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의 자세 및 안전 등 운전업무 종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u>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49조의9(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플랫폼운송사업의 결격사유, 플랫폼운송약관,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사업의 휴업·폐업, 사고 시의 조치,	제49조의9(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 ----- ----- -----플

플랫폼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플랫폼운수종사자 교육, 사고 기록의 유지관리, 여객의 준수 사항, 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 하여는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4조(제1항 전단,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9항 및 제10항만 해당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 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외한다), 제19조, 제21조(제2 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2 항 및 제13항만 해당한다), 제2 5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1 항, 제27조의2 및 제88조를 준 용한다.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플랫폼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플랫폼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제22조(제1항의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4 조제1항 또는 제6항-----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2.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 8. (생략)

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4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략)

6. 제24조제1항의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

-----.

--.

1. (현행과 같음)

2. -----제24조제1항 또는 제6항-----

3.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

제9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24조제1항 또는 제6항---

6의2. ~ 16. (생략)	6의2. ~ 16.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